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3 발의연월일: 2020. 6. 29.

발 의 자:이학영·최인호·이장섭

임호선 · 우원식 · 김교흥

고용진 · 신동근 · 홍익표

이동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만큼,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므로, 은행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형 금융회사인 은행이 일반 소비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서 불합리한 거래행태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반 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은행의 주주가 은행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 및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이 비업무용 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은행의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내에 보유하

여야 하는 자산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전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5제3항, 제39조, 제52조 및 제62조제3항).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5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주주가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른 사실 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 및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의 제목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을 "(비업무용 자산 등의보고 및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처분하여야"를 "금융위원회에보고하고, 이를 처분하여야"로 한다.

제5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시기·절차, 그 밖에"를 "시기·절차, 제5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권고와 관련한 심사기준, 그 밖에"로 한다.

- ② 은행은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 2. 정당한 사유 없는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은행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 3.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6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보유하는 대한민국 내 자산이 제1항에서 정한 자산보다 적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신속하게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족한 자산을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5(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35조의5(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①・② (생 략)	제출 요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주주
	가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
	른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 및 주주에게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u>있다.</u>
제39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	제39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
분) 은행은 그 소유물이나 그	<u>및 처분)</u>
밖의 자산 중 이 법에 따라 그	
취득 또는 보유가 금지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	
라 <u>처분하여야</u> 한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u>이를 처분하여야</u> 한다.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① (생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①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② 은행은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 시기·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 · ② (생략) <신 설>

-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 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 니할 것
- 2. 정당한 사유 없는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은행이용 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 하지 아니할 것
- 3.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권 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기준에 적합할 것
-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u>시기·절차</u>, 제5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권고와 관련 한 심사기준, 그 밖에-----

제62조(외국은행의 국내 자산) 제62조(외국은행의 국내 자산)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 점이 보유하는 대한민국 내 자 산이 제1항에서 정한 자산보다

적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 는 신속하게 보전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부족한 자산을 보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